

1. 배경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자 간 밀접하게 접촉하는 환경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면 입소자 또는 종사자 간 빠르게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 입소자들은 대부분 고령자로 면역이 저하되거나 기저질환 등이 있어 감염병 발생 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급속히 감염병이 확산되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처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목적

본 지침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상적인 건강 사정을 통한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임

3. 환자 발생 및 감염병 유증상자의 조기 발견 지침

1) 1단계

- 감염증상(피부 가려움, 발열, 기침, 설사 등)이 있는 입소자를 확인하기

2) 2단계

- 감염증상이 있는 입소자를 시설장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보고하기
-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사정하고 감염성 질환이 확진(또는 확인)될 때까지 표준주의(예. 손위생, 환경 청소 및 소독, 개인보호구 착용 등) 지침을 준수하기

3) 3단계

- 감염병이 의심되는 입소자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기
- 촉탁의 또는 협약 병원에 내원하여 감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 감염병이 진단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및 시군구에 보고하기
- 입소자 및 종사자의 전염병(결핵, A형간염, C형간염, 옴 등) 발병현황과 밀접접촉자(돌봄 입소자) 감염예방 조치실적(진료 포함)을 매 반기별(6월 말, 12월 말)로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에 보고하기

4) 4단계

- 종사자와 입소자에게 감염성 질환에 대해 교육하기
- 전파경로별 주의 지침에 따라 격리주의를 시행하기
- 접촉성 감염질환의 경우 접촉한 종사자 및 다른 입소자의 감염 여부 감별을 위해 촉탁의에게

진료 의뢰하기

- 감염질환이 확진된 입소자 격리실에서 나온 폐기물과 세탁물은 분리하여 배출하기

5) 5단계

-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 입소자를 의료기관 이송 등의 조치하기
- 해당 생활실,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실내 전체 소독 시행하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 감염증상 (예: 피부가려움, 발열, 기침, 설사 등) 입소자 발견	▶ 시설장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보고	▶ 보호자 연락 ▶ 병원진료 의뢰 ▶ 필요시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및 시군구 보고	▶ 전파경로별 격리주의 준수 ▶ 입소자 및 종사자 교육	▶ 생활실 소독 ▶ 입소자 병원 이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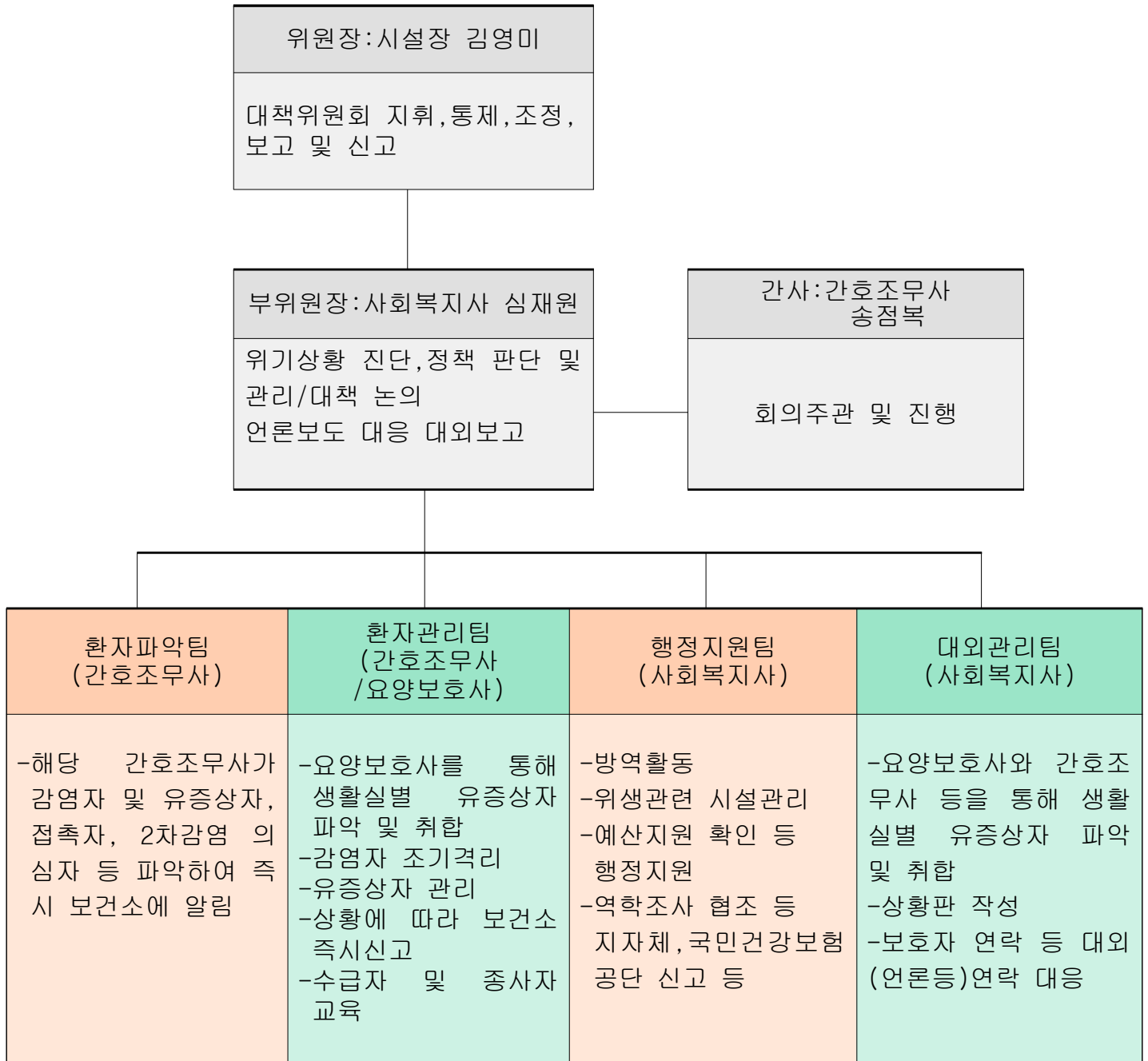
감염병 발생 양상	상황	대응체계	주요 조치내용
환자 발생 시	-의심 또는 확진자 1명 발생	감염병 관 리 · 대책위 원회 구성 운영	-감염병 환자(유증상자 포함)관리 -접촉자 관리 및 추가 발병자 파악 -보건소 신고(관내 운영센터 신고) -감염병 예방 및 발생시 대처 요령 교육
감염병 확산 시	-의심 또는 확진 환자 2명이상 발생 -전체 인원의 5% 발생 ※감염병 유형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감염병 환자(유증상자 포함)관리 -감염자 조기격리 및 유증상자 관리 -보건소 신고(관내 운영센터 신고) -장기요양기관 내 집단 활동 자제 -시설물 및 취약지역 소독, 방역 실시

※ 감염질환 의심자의 이송 매뉴얼

1. 감염질환(의심)자가 있다면 보호자에게 알리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퇴실시키기
이송하거나 퇴실하는 동안 1인실(또는 특별실)이 있다면 잠시 대기하기
2. 감염질환(의심)자 이송할 때는 이송수단(예. 보건소 응급차량, 119 등)을 사전에 준비하기
3. 신종 감염병의 경우, 이송 수단(예. 구급차 등)까지 이동할 때 별도의 동선(또는 방법)을 확보하기
4. 이송 요원은 감염성 질환에 맞는 적절한 개인보호구(예. 장갑, 가운, 마스크, 페이스
섉�드 등)를 선택하여 착용하기

3

송산실버빌 감염병 관리대책위원회



※ 시설 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여 확산 시에는 단계적으로 대응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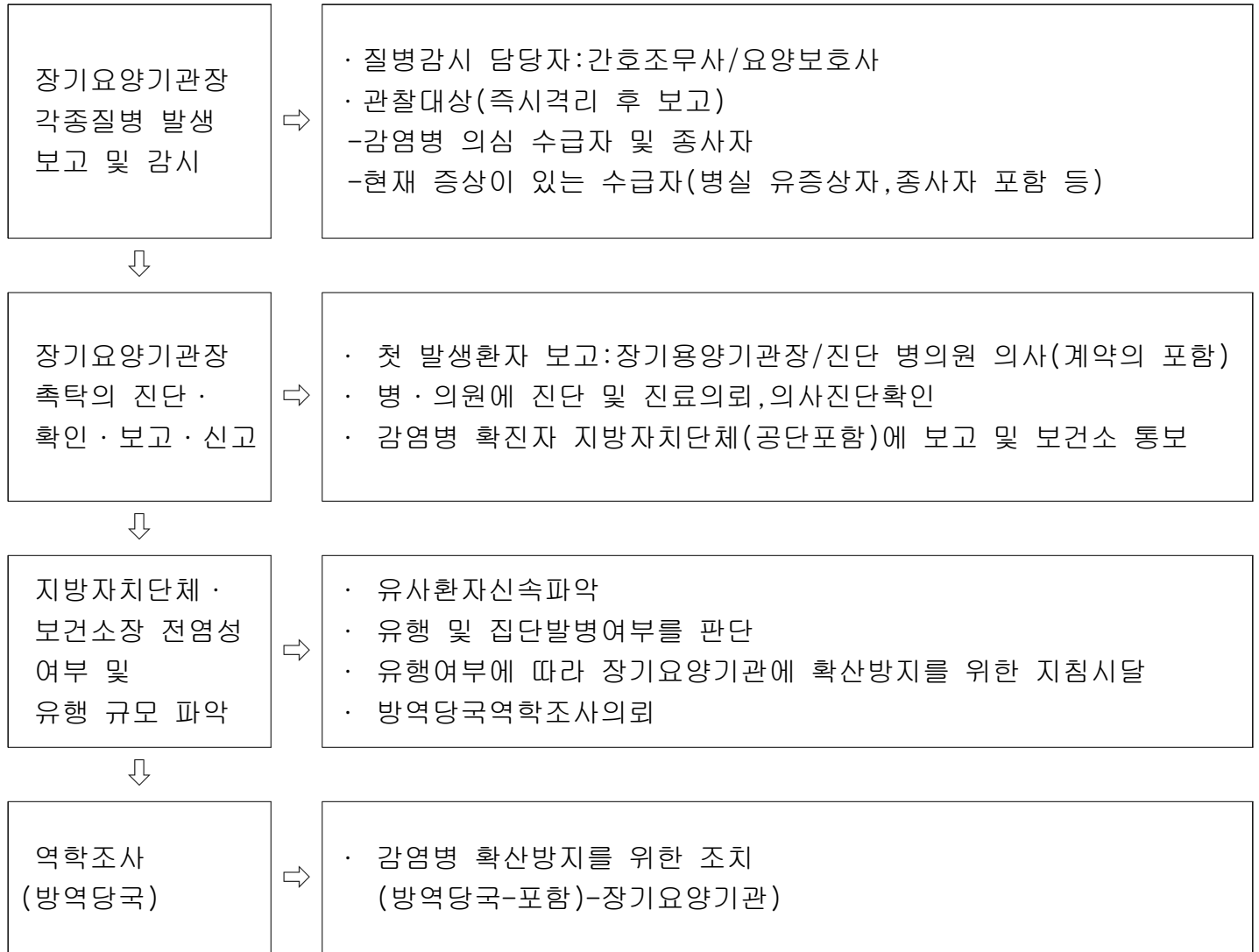
송산실버빌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

단계	구분	단계별 업무	업무분담
1단계 사정 확산 발생 감지	환자발생	· 요양보호사 등: 감염자 발생에 따른 상황전파 · 간호사: 유증상자 확인→즉시 보건소 의뢰·신고	전체종사자
	증상 사정 격리 조치	· 증상확인, 감염병 발병 가능성 조사·즉시 격리 조치 · 관내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상황 보고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진료의뢰 및 확인 대책마련	· 병원 진료 여부 결정하여 진료 의뢰: 보건소 협의 · 보호자연락 → 종사자 → 시설장 보고체계 확립 · 종사자 감염예방 주의 안내, 감염병 정보 수시 파악 · 위원회 가동, 상황판 설치, 보건소 신고라인 가동	간호조무사 시설장
2단계 진단 확산 발생 확인	진단확인	· 감염병 의심자는 확진될 때까지 지속격리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 협력조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보호자 안내	·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 대상자 관리 작성·장기요양기관 내 입소자(전체)·보호자 연락현황 및 조치사항 등 안내	간호조무사 시설장
	보고 및 신고확산방지	· 감염병 확진 시 초발 확진자 접촉 대상자 작성 보고·접촉 대상자 보건소 신고 및 대응방안 협의·감염자 접촉장소 소독·관리, 종사자 예방교육 철저	간호조무사 시설장
3단계 대처 확산 초기 및 유행	의심자 관리 환자 관리	· 확진자 :의료기관 이송 치료(연락체계 구축)· 감염병 추가 의심자 지속 확인:보건소 협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미감염 수급자 및 종사자 관리	· 감염병 예방 교육 홍보, 환자현황 지속 파악 보고 · 의심환자 격리, 진료의뢰 및 보건교육 · 고위험군 해당 입소자 및 종사자 특별관리	전체종사자 촉탁의 및 간호사 등
	접촉자 관리 접촉자 관리	· 접촉자 조사 및 추적관찰 · 환자가 발생한 병실 및 주변 소독 실시	간호사 요양보호사
	추가발병자 파악 확산방지 언론대처	· 추가 발병자 조사 및 추적관찰, 현황 지속 파악 보고 · 노출 시점부터 전염시점까지 접촉자 추적 파악 · 시설물 소독 및 방역, 단체 활동 중지 감염확산 예방 교육 · 보건소 연계하여 일관된 자료 제공 및 언론대응	간호조무사 및 전체 종사자
4단계 전파 차단 감염병 종식	감염병관리· 대책 위원회 운영 지속관리 감염병 발생종료 선언	· 추가 의심자(종사자) 지속관리, 추가 환자 동태 파악 · 유행 감시 : 발생 현황 파악 통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역학조사 협조 : 관련 기관 요청 시	사회복지사
		· 최후 접촉자를 발생 질환별 최대 잠복기간까지 추적 관찰하여 새로운 발병자가 없으면 상황 종료	간호조무사 시설장

5

송산실버빌 감염병 발생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역할 수행체계

단계	판단기준	임무 및 역할	비고
1단계 관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의 신종감염병 발생 · 국내의원인불명 감염 환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자 · 종사자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 대응체계(절차)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위기로 발전 가능성 잠재 · 장후 시 활동
2단계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주의보 발령 · 국내에서 신종감염병 발생 · 지역별 재출현 감염병 발생 · 대규모 침수지역 · 수인성 감염병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대책위원회 업무분담 점검 및 업무 담당자 교육 · 감염자, 유증상자, 의사환자 파악(입소자, 종사자) 보고 · 감염자와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및 격리 조치 ·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 입소자 현황 및 관리에 대한 보호자 안내 · 환자 접촉을 통한 2차 감염 접촉자 파악 후 격리, 보호자에게 통보 · 관리대장, 소독 관련 물품, 진단 관련 물품(예. 체온계 등) 등 점검 · 시설 물품, 장비 등에 대한 방역실시 및 손씻기 철저 지도 등 개인위생 강화, 단체 활동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위기로 발전 가능성 식별 · 협조체계 가동
3단계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지역으로 전파 · 국내 신종감염병의 타지역으로 전파 · 재출현 감염병의 타지역으로 전파 · 수인성 감염병의 타지역으로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자, 유증상자, 의사환자 파악(입소자, 종사자)보고 · 감염자,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및 격리조치 · 환자접촉을 통한 2차 감염 접촉자 파악 및 잠복기간 동안 별도 격리, 보호자에게 통보 · 시설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방역실시 및 손위생 철저 지도 등 개인위생 강화 · 방역기관 및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필요 시 휴업 여부 결정 시행 · 단체 활동 자제/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위기로 발전 가능성 농후 · 대비계획 점검 · 보건보조인력 시설자체 지원
4단계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의 전국 장기요양기관 확산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 입소자 현황 및 관리에 대한 보호자 안내 · 감염자,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및 격리 조치 · 환자 접촉을 통한 2차 감염 접촉자 파악 및 잠복기간 동안 별도 격리, 보호자에게 통보 · 방역기관 및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필요 시 휴업 조치, 단체 활동 금 	즉각 대응 돌입



- 국가위기경보체계(4단계,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단계마다 재난관리체계 표준화된 위험정도를 평가하여 위기수준에 맞는 감염관리(대응) 수행하기

2022년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송산실버빌